

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법제처와 경기도의회가 손잡아

- 법제처·경기도의회,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12월 14일 경기도의회(의장 염종현)와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경기도의회(경기도 수원시 소재)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,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.

이번 업무협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‘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· 소통 · 협력 강화’를 수행하면서,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
업무협약을 통해 법제처는 경기도의회의 입법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문 법제교육을 실시하고,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법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하였다.

또한, 경기도의회도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 ·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.

이완규 처장은 “1,400만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치행정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한다”라면서, “앞으로도 법

제처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자치법제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백종운	(044-200-6752)
		담당자	서기관	송하정	(044-200-6753)

